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제도 안내

□ 사업개요

- (목적)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를 통해 당사자간 원만하고 신속한 분쟁해결 지원
- (근거)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법」 제5장 분쟁조정 및 중재(제23~28조)
 - * 제23조(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설치), 제24조(조정·중재위원의 제척 등), 제25조(분쟁의 조정 등), 제26조(분쟁의 중재 등), 제27조(자료요청 등), 제28조(조정·중재비용 등)
- (위원회 구성) 50명(직능 및 기술위원 50)
 - * 직능위원 : 판사 4, 변호사 12, 변리사 13, 법학교수 6, 기술거래사 10, 유관단체 5
 - * 기술위원 : 법률·법학 21, 기계·소재 6, 전기·전자 4, 정보통신 8, 화학 6, 바이오·의료 1, 에너지·자원·환경 2, 지식서비스 2
- (사업) 기술탈취 등 피해기업으로부터 분쟁조정을 신청받아 신속히 해결하고, 검찰 등 관련부처와 긴밀한 공조 모색

분쟁 해결	조정		중재	
	조정부의 도움으로 당사자간 합의사항을 조율하여 분쟁해결('15년~)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중재부 판정으로 분쟁해결('15년~)	
비용 지원	조정·중재 대리인 비용		소송비용	기술가치평가 비용
	조정·중재 대리인 선임 비용 지원 (최대 1,000만원)('16년~)		조정 불성립 후 연계된 소송 비용 지원 (최대 2,000만원)('16년~)	기술분쟁 활용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최대 5,000만원)('22년~)
범부처 연계	법원 연계	검찰 연계	행정조사 연계	동반위 지수가점
	민사사건 연계('15.1월~)	형사사건 연계('19.11월~)	중기부 행정조사 연계('18.12월~)	대기업 조정 합의시 지수가점 부여('19년~)

- (신청자격)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23조항), 중견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 9조3항)
- (분쟁범위) 중소기업 기술(산업재산권, 저작권, 영업비밀, 경영정보 등)
- (상담접수)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지원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 (담당자) 이용희 과장: 02-368-8768, lwh12@win-win.or.kr
 - 김슬빛나 대리: 02-368-8769, sbnk@win-win.or.kr

□ 사업내용

① 중소기업기술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

* 피해기업의 조정 또는 중재 신청이 있을 시, 3명 이상 5명 이하 위원회 위원으로 해당사건을 담당할 조정부 또는 중재부를 구성하여 진행

- (조정) 분쟁 당사자간 합의 유도(재판상 화해의 효력)
- (중재) 분쟁에 대한 중재판정(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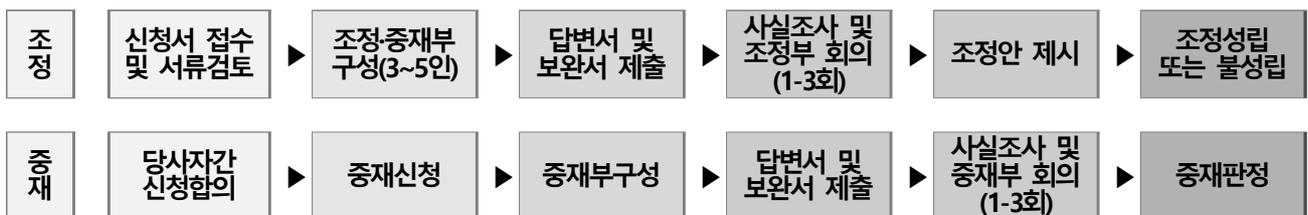
< 민사제도 비교 >

구분	소 송	조 정	중 재*
신청방식	일방적 소송 제기 가능	일방적 조정 신청 가능	중재합의 후 신청 가능
법률대리인	변호사 선임 필요	변호사 선임 선택 가능	변호사 선임 선택 가능
소요비용	인지세, 송달료, 변호사 등 * 수천만원 ~ 수억원	수수료* 외 비용지원 * 11,000원 ~ 55,000원	수수료* 외 비용지원 * 22,000원 ~ 수백만원
해결방식	법원의 판사 판결	조정부의 조정안 제시	중재부의 판정
심급방식	3심제(1~3심)	단심제	단심제
소요기간	가변적인 해결기간	조정부 구성 후 3개월 이내	중재부 구성 후 5개월 이내

* 중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신청인과 별도의 중재합의가 필요하며, 중재결과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분쟁의 종국적 해결(소송불가)

- 지원절차 : 해당 조정(중재)사건에 대한 조정(중재)부를 구성하고 조정(중재)회의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후 조정안 제시(중재 판정)

< 조정·중재 절차 >



② (비용지원) 분쟁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소송비용,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 비용지원 제도 >

지원유형	지원내용	지원금액
조정·중재 대리인 선임비용	조정·중재를 신청한 기업의 법률대리인(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 조정성립 시 피신청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최대 500만원 지원 * 법원연계 조정성립 시 양 당사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최대 500만원 지원	최대 1,000만원
소송비용	조정 불성립 사건이 소송으로 연계되는 경우, 지원심사를 거쳐 소송비용 지원	최대 2,000만원
기술가치평가 비용	조정부가 기술가치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분쟁 활용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최대 5,000만원

□ 신청조건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단, 「공정거래법」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

- (신청범위) 중소기업 기술

구 분		기 술 대 상		
기술상 정보	산업 재산권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권	□ 문학예술분야 창작물에 대한 권리	
		저작인접권	□ 실연가·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의 권리	
	신지식 재산권	산업저작권	□ 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첨단산업재산권	□ 반도체설계, 생명공학기술	
		정보재산권	□ 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 뉴미디어	
신상표권 등		□ 프랜차이즈, 캐릭터, 인터넷도메인네임, 새로운 상표 (색채상표, 입체상표, 소리, 냄새상표)		
기 타 기술자료	□ 시설 및 제품의 구성도, 설계도, 물품의 생산·제조방법 □ 기술 매뉴얼, 유지보수 자료 □ 물질의 배합방법, 연구 보고서 및 데이터 □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및 디지털 콘텐츠 등			
경영상 정보	경영자료	□ 기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기밀서류(재무, 회계 등) □ 기업의 매출과 관련된 기밀서류(원가, 거래처, 보고서 등)		

- (신청방법) 상시 상담(전화) 후 접수(이메일)
- (제출서류) 분쟁조정·중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증빙자료 등
* 관련서식은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수수료

구 분	신청금액	수수료(부가세 별도)
조 정	1억원 미만	10,000원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30,000원
	10억원 이상	50,000원
	조정대상 금액이 없는 경우	10,000원
중 재	1천만원 미만	20,000원
	1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5,000원+신청금액×0.15%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55,000원+신청금액×0.10%
	10억원 이상	555,000원+신청금액×0.05%
	중재대상 금액이 없는 경우	20,000원

* 중재는 신청인이 선납부(예납)

** 수수료 감면대상: 창업 후 7년 미만의 중소기업, 벤처기업 확인서 보유기업, 기술 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보유기업, 법원 연계 조정사건

□ 상담 및 접수

○ (신청)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사무국

* (지원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 전담기관)

** (담당자) 이윤희 과장: 02-368-8768, lwh12@win-win.or.kr
김슬빛나 대리: 02-368-8769, sbnk@win-win.or.kr

□ (홈페이지) 기술보호울타리 <https://www.ultari.go.kr>

□ (통합안내)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02-368-8787

궁금해요 ! 증기맨

→ 자주찾는 질문, 사업참여 노하우, Tip, 타부처 유사시책 등 소개

● 조정과 중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 조정은 조정부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 간 자율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조정부에서 제시한 조정안을 양 당사자가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 중재는 당사자 간 중재로 해결한다는 합의에 의해 신청이 가능하며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부의 판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소송 중인 사건도 조정·중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 ☞ 조정, 중재, 소송은 모두 민사에 해당하며, 동일사건으로 민사를 동시에 진행 할 수 없기 때문에 진행 중인 소송을 중지 혹은 중단하고 조정·중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 중재는 중재계약에 의해 법원의 심판권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 시 그 소는 각하됩니다.
- ☞ 다만, 경찰·검찰 등 수사 중인 형사사건의 경우는 조정·중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참고사항: 사례에 나오는 업체명 이니셜은 업체명과 전혀 무관함

○ 2021년도 조정 우수사례

- ◇ 선박관련 엔진부품을 제조개발하는 전문업체인 A사는 대기업이 제조하는 엔진의 피스톤 등을 국산화하여 대기업(B사)에 납품해 옴
- ◇ 대기업은 A사에게 피스톤 제조기술을 수차례 요구하여 취득하였으며 거래기간 동안 B사와 피스톤을 공동개발함
- ◇ 대기업은 A사와 공동개발한 피스톤 설계도면의 수정본과 피스톤 제조기술을 타기업에 제공하여 생산하도록 하였고, 타기업에서 해당 피스톤을 납품받음
- ◇ 이를 인지한 A사의 신고로 다양한 분쟁을 거쳐 조정을 신청함
- ◇ 지속적인 협의 및 조정회의에서 A사와 B사는 협력을 통해 다양한 조정안 등을 논의하였고, 최종적으로 A사는 위로금 명목의 일시금 지급 수용, B사는 거래 재개를 위해 적극적인 협력안 마련 등의 내용을 통해 합의했다.
- ◇ 조정을 통해 17년부터 이어진 분쟁이 종식되었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대화를 통해 향후 거래관계까지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한 의미있는 조정이었음

○ 2022년도 조정 우수사례

- ◇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인 C사는 대기업(D사)과 거래 중 C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요구하여 기술자료를 제공하였으나, D사는 관련 기술자료로 특허를 등록함
- ◇ C사는 D사에게 정상적인 거래를 요청했으나 D사는 C사와 거래 종료를 추진하였고, 그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여 조정신청
- ◇ 양 사 모두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을 원하여 조정에 적극적으로 임하였고, 지속적인 조정회의에서 조정부 및 C사, D사는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분쟁 해결 방안을 위해 조정안 등에 대해 논의함
- ◇ 분쟁 종료 및 합의된 조정 내용을 추가하여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며, 양 당사자 모두 수락하여 조정 성립
- ◇ 조정을 통해 '18년부터 이어진 분쟁이 종식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술분쟁 조정성립으로 상생방향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참고2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 절차

□ 조정 절차

추진절차	업 무 내 용	유의사항
법률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기술침해신고서 접수 기술분쟁 무료 법률자문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호사 또는 변리사 매칭
↓		
신청서 접수·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정사건 개요 정리, 사건번호 부여 등 접수사실 안내 및 통지서 등기우편 발송 - 피신청인 대리인 선임 안내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접수일자 기입, 접수도장 날인 등
↓		
조정부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정부의 장 지명(15일 이내, 조정·중재위원장) 조정위원(2~4명) 지명(조정부의 장) 조정부 구성 결과보고 및 기안 - 사건의 당사자에게 결과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정부 구성 검토시 제척사항 사전 확인 변리사 등 기술위원 중심으로 구성
↓		
사실조사, 자료요청 등	<p>(필요 시 추진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실조사(현장방문) 실시 신청의 변경·보완 접수 추가 자료요청 전문가(참고인) 의견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실조사, 추가자료 요청, 전문가 의견청취 여부는 조정부 결정
↓		
조정부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정부 회의일정 수립·통지(7일전) 당사자, 참고인 출석 조사 기일 연기 요청서 접수 시 결과통지 조정안 작성(3개월 이내, 조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수당은 사건당 최대 5회 까지 지급 조정기일 조서 작성 후 조정부의 장 서명날인
↓		
조정안 제시 및 조정조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정안 제시(양 당사자) 조정안 수락서 접수(14일 이내) (수락 시) 조정조서 작성 및 정본 교부 - (불수락시) 조정불성립에 따른 조정 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정안 제시, 수락서 제출안내 병행 조정조서 작성 시 조정부 및 당사자 전원 참석
↓		
사건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정사건 결과보고 사건 기록 별책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서보존기간 5년 조정조서는 영구보관